

대여금고 약관

제1조 보관대상

- ①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관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② 임차인이 위험물질·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 보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조 계약기간

대여금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후에도 계속 대여금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제3조 신규

은행은 대여금고 신규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임차인은 이용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은행에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식 대여금고의 경우에는 임차인 및 이용대리인 모두 대여금고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을 등록합니다.

제4조 열쇠(카드포함)의 보관 및 사용

- ① 대여금고 열쇠는 임차인용, 은행용 및 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② 임차인용 및 예비용 열쇠는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 ③ 은행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대여금고 임의열람 시 은행용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대여금고 이용

- ① 대여금고를 열 때는 은행이 정한 이용절차를 마치고 임차인용 열쇠(또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단, 전자식 대여금고 중 바이오정보(손바닥정맥 등)로 본인인증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규 후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임차인은 대여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대여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임차인의 요청이나 사망, 법적사유 등이 있을 때는 대여금고의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대여금고는 은행의 영업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대여금고의 임의열람

- ① 대여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 화재,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
 - 2.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있는 경우
- ②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14일 이내에 열람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열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은행이 임의로 열람하고 이후에 고객에게 그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관물품의 임의처분

- ① 계약기간이 끝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을 때, 은행은 임차인에게 임의열람예정 통지 후 임의열람 하여 보관물품을 은행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부득이 처분해야 할 때는 보관물품을 공탁, 경매 또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 물품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되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보관물품의 임의처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 후 남은 금액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보증금 및 수수료

- ①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은행이 정한 대여금고 보증금을 내야 하며,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보증금은 대여금고 거래가 끝난 후 임차인이 내야 할 대여금고 관련 채무를 갚고 그 잔액을 내줍니다.
- ③ 임차인은 대여금고 거래를 시작할 때 또는 계약을 다시 할 때 보증금 외에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수수료 변경 시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약관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제10조 거래해지 사유

- ① 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임차인이 해지를 신청한 때
 - 2. 임차인이 사망한 때
 - 3. 임차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
 - 4. 임차인이 은행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5.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상당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은 때
 - 6. 은행이 대여금고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② 은행이 정한 제①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 ③ 해지 때 임차인은 이용열쇠를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못한 때는 은행에 그 비용(열쇠교체 및 개방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11조 해지 때 수수료 계산

- ① 기한 전에 해지할 때는 이미 받은 수수료 중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빼고 잔액을 돌려 줍니다.
- ② 기한이 지난 후에 해지할 때는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제12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대여금고 열쇠나 신고인감을 분실, 도난, 손상하거나,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임차인에 대한 은행의 통지는 임차인이 은행에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하며, 임차인이 변경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임차인이 대여금고 이용열쇠를 분실, 도난, 손상하여 자물쇠와 열쇠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대여양도 금지

대여금고의 이용권리는 대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면책

- ①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 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 또는 예비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어준 때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전자식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지 않으며, 기 교부된 **임차인용 열쇠 또는 예비용 열쇠** 및 정맥인식을 이용하여 대여금고를 열람 후 발생한 사고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준용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KB 바이오인증(손쉬운 banking)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구 국민은행의 대여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대여금고업무는 2002.9.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구 국민은행의 대여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대여금고업무는 2015.12.30 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구 국민은행의 대여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대여금고업무는 2016.11.14 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구 국민은행의 대여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대여금고업무는 2017.06.19 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구 국민은행의 대여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대여금고업무는 2019.02.28 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구 국민은행의 대여금고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대여금고업무는 2020.03.31 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7.13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